

보육교사교육원 운영세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본 교육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 본 교육원의 명칭은 “서울신학대학교 부설 보육교사교육원(이하 교육원)”이라 칭한다

제3조 (소재지) 교육원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101번지(서울신학대학교 내)에 둔다.

제4조 (정원) 보육교사보수교육과정(이하 ‘보수과정’)의 교육정원은 보육법령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 장 교육훈련운영

제5조 (교육과정) 교육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교육과정을 둔다.

1. 보육교사 보수교육(1급 승급과정 포함)
2. 시설장 보수교육과정
3. 실기교육
4. 기타 보육에 관계되는 교육과정

제6조 (교육훈련대상) ①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다

②시설장 보수교육과정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을 그 대상으로 한다.

③기타의 과정은 그 과정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.

제7조 (운영위원회) ①교육원의 교육계획 수립,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심의하고 교육원장(이하 ‘원장’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보육교사 교육과정 운영위원회(이하‘위원회’)를 둘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7명 이내로 한다.

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.

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3 장 학적관리

제8조 (학적관리) 원장은 본 보수교육과정의 등록자 및 수료자의 부를 과정별로 분류 반영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9조 (제증명서 발급)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. 수료증의 발급절차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4 장 평가관리

제10조 (평가관리) 평가관리는 교육원의 운영지침 및 보육사업지침을 준수한다.

제 5 장 교 직 원

제11조 교육원은 교육에 필요한 교직원을 둘 수 있다.

- ① 원장 1인
- ② 교수 : 전임교수 5인 이상
- ③ 간사 : 1인 이상

제12조 교직원의 임용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임용하고 관련서류를 비치한다.

제 6 장 회 계

제13조 (경비와 유지방법) 교육원의 운영비는 수강료,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비용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4조 (회계처리) 교육원의 회계처리는 교육원운영지침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5조 (회계년도) 교육원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운영세칙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개정) 이 운영세칙은 2002년 9월 개정하여 2002년 10월부터 시행한다.